

학칙 개정(안) 공고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및 「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」 제66조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I 개정사유 및 내용

1. 개정사유 :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2. 개정내용 : 부속기관 삭제 및 교무위원회 구성 변경

II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7조 (부속기관 및 부설기관) ① 본 대학교에 부속 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8.21., 2020.9.3.) 1. 부속기관 : 평생교육원, <u>글로벌교육원</u> (개정 2018.8.21., 2020.9.3., 2022.11.2., 2023.6.7.) 2. 부설기관 (개정 2018.8.21., 2020.9.3.) 3. (삭제 2020.9.3.) ② (생략)	제7조 (부속기관 및 부설기관)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8.21., 2020.9.3.) 1. 부속기관 : 평생교육원 (개정 2018.8.21., 2020.9.3., 2022.11.2., 2023.6.7., 2026.00.00.) 2. 부설기관 (개정 2018.8.21., 2020.9.3.) 3. (삭제 2020.9.3.) ② (현행과 같음)	부속기관 '글로벌교육원' 삭제
제55조 (교무위원회)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8.8.21.)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, 학장, 대학원장, 각 처장, 평생교육원장, 산학협력단장, <u>글로벌교육원장</u> 과 따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(신설 2018.8.21.) ③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	제55조 (교무위원회)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8.8.21.)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학장, 대학원장, 각 처장, 평생교육원장, 산학협력단장 과 따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(신설 2018.8.21.) (개정 2026.00.00.)	자구 수정

다.	③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	
	<u>부 칙 <2026. 00. 00.></u> (1)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) 제7조 개정 / 제55조 개정	부칙 신설

Ⅲ 의견 수렴

위의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제출기한 : 2026.10.7(수)까지
2. 제 출 처 : kyomu@cufs.ac.kr
3. 제출방법 : 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소속학부/과, 학번, 연락처)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